

제 1846 호
1994. 9.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원증
편집인 : 공보관 김우석
전화 : 731-8111~3
인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화 : 273-8111~3

시보

차 례

- 공문시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수도자재사업소) 3
- 훈령
제 807 호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 3
- 고시
제 1994-286 호 사료성분등록 5
제 1994-288 호 서울특별시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 6

(이면계속)

명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로서로 고통분담 고루고루 행복분담”

● 구 고 시

제 1994-3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관악) 7

제 1994-3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변경)(용산) 8

제 1994-3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용산) 10

제 1994-39 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양천) 11

제 1994-4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양천) 12

● 구 공 고

제 1994-134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동작) 12

제 1994-145 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영등포) 13

제 1994-146 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영등포) 13

제 1994-147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마포) 13

제 1994-171 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구로) 14

제 1994-17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중구) 14

제 1994-279 호 하천내공작물설치허가(서초) 17

● 사업소고시

제 94-9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7

제 99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18

● 인 사 발 령

..... 19

● 공 지 사 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전화번호변경안내 21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제

16조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하오니 필요한 기관에서는 1994년 9월 15일까지 관리전환요청하시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1994. 9. 5
수도자재사업소장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제조일	상 태
5950-047	변압기	3상, 6900/220V 50KVA	대	2	2,720,000	'84	노후
6105-028	전동기	3상, 220/380V 7.5HP	"	1	97,900	'81. 4	"
"	"	3상, 220/380V 50HP	"	1	781,000	'84. 10	"
"	"	3상, 3300V, 100HP	"	1	2,486,000	'85. 4	"
"	"	3상, 3300V, 100HP	"	1	2,486,000	'83. 7	"
"	"	3상, 3300V, 200HP	"	2	5,310,000	'73. 3	"
"	"	3상, 3300V, 250HP	"	1	5,997,000	'82. 10	"
"	"	3상, 3300V, 400HP	"	2	9,400,000	'84. 8	"
4310-015	펌 프 (원심)	Q=1.8m ³ /min, M=65m, 50HP	"	1	1,232,000	'84. 10	"
"	"	Q=2.4m ³ /min, M=110m, 100HP	"	1	1,416,000	'85. 4	"

훈 령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집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 9. 5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사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93년부터 일정 시설물에 대하여, 94년부터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비용

(징수액의 10%상당액)을 국가로부터 교부받고 있으나,

○환경처 훈령으로 징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의 집행방법과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자 기관마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아울러 기관별 징수비용 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징수비용의 집행용도를 세부적으

로 정함(안 제3조).

- 일용직 인건비: 1명 이내
-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장표 등의 인쇄비, 전산용지 등의 구입비
- 부담금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개인용 컴퓨터 등 구입비

나. 징수비용의 집행 한도액을 설정함(안 제4조).

- 당해 기관에 교부된 징수비용의 10%이내

다. 부담금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훈령제807호

서울특별시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집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처훈령 제222호 93. 1. 15,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징수비용의 집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울러 기관간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환경과)와 자치구(환경과)의 부담금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징수비용의 집행용도) 당해기관에 교부된 징수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부담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준한다)
2. 일용직 인건비: 1명 이내(300일 미만

- 의 일시 고용인부)
 - 3. 일반수용비, 수수료
 - 가. 부담금고지서·장표 등 인쇄비
 - 나. 전산용지 소요대금
 - 다. 전산소모품 대금
 - 라. 부담금 부과·징수 안내문
 - 마. 전산단말기 운영경비
 - 바. 기타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한 인쇄, 사무용품 구입비 또는 수수료
 - 4. 자산취득비
 - 가. 전산프린터기 구입
 - 나. 컴퓨터 구입
 - 5. 물품구입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 6. 행정소송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행정소송 비용
 - 7.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 가. 포상금총액 지급한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총액은 교부된 징수비용의 1% 상당액 이내로 한다.
 - 나.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준한다.
 - 8.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 가. 활동비
 - 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 행사비 등 업무추진비
 - 동사무소에 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의뢰했을 경우 그 비용
 - 나. 정보비
 - 부담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포괄적 성격의 특수사업 수행활동비
 - 9. 기타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 제4조(징수비용의 집행 한도액 설정) 기관별 징수비용의 집행한도액은 당해기관에 교부된 징수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 제5조(부담금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

부담금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환경과장
 2.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부담금 업무
를 담당하는 계장
 3. 상시 부담금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및
그 보조자
 4. 별도 계획에 의하여 일시 부담금 업무
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자
- 제6조(예산편성) 각 기관에서는 당해년도
분 예산편성시 전년도 부담금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기관실정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4-286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단미 및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같
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9. 5

서울특별시장

1. 등록업체명: 한영축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8-6

대표자: 한중완

등록사료(2종):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 류	사료의 명칭	사 료 의 사 용 범 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 슘	수 분	조섬유	조회분
서울-591	수입단미	발효사료1호	사료제조원료용	11.0%	-%	-%	8.0%	3.0%	4.0%
	사 료	(PROBIO-2X)		이 상	이 상	이 상	이 하	이 상	이 하
서울-592	수입단미	발효사료2호	사료제조원료용	22.0%	-%	-%	8.0%	3.0%	6.0%
	사 료	(PROBIO-4X)		이 상	이 상	이 상	이 하	이 상	이 하

2. 등록업체명: (주)대산물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8-4

대표자: 이희상

등록사료(7종):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 류	사료의 명칭	사 료 의 사 용 범 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 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593	수입배합	큰개용1호	일반견용	25.83%	13.0%	1.0%	1.0%	4.0%	12.0%
	사 료	사 료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하	이 하
서울-594	수입배합	큰개용2호	활동견용	31.87%	18.0%	1.2%	1.0%	4.0%	12.0%
	사 료	사 료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하	이 하
서울-595	수입배합	큰개용3호	노 견 용	18.71%	8.0%	0.5%	0.5%	4.0%	12.0%
	사 료	사 료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이 하	이 하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596	수입배합 사료	큰개용 4호 사료	비만견용	23.1% 이상	8.0% 이상	0.85% 이상	0.7% 이상	5.0% 이하	12.0% 이하
서울-597	수입배합 사료	큰개용 5호 사료	일반견용	23.6% 이상	11.82% 이상	0.85% 이상	1.3% 이상	5.0% 이하	10.0% 이하
서울-598	수입배합 사료	큰개용 6호 사료	간식용	20.0% 이상	5.0% 이상	1.0% 이상	0.6% 이상	10.0% 이하	12.0% 이하
서울-599	수입배합 사료	어린고양이용 사료	이유기-생후 1년	35.11% 이상	18.0% 이상	1.47% 이상	1.04% 이상	4.0% 이하	10.0% 이하

3. 등록업치명: (주)화성실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5-

5

대표자: 백영준

등록사료(6종): 독일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600	수입배합 사료	어린광어용 1호 사료	산란어 및 치어	50.0% 이상	12.0% 이상	2.0% 이상	1.4% 이하	1.8% 이하	9.0% 이하
서울-601	수입배합 사료	어린광어용 2호 사료	산란어 및 치어	50.0% 이상	12.0% 이상	2.0% 이상	1.4% 이하	1.8% 이하	9.0% 이하
서울-602	수입배합 사료	육성광어용 1호 사료	유어	50.0% 이상	12.0% 이상	2.0% 이상	1.4% 이하	1.8% 이하	9.0% 이하
서울-603	수입배합 사료	육성광어용 2호 사료	유어	50.0% 이상	12.0% 이상	2.0% 이상	1.4% 이하	1.8% 이하	9.0% 이하
서울-604	수입배합 사료	큰광어용 1호 사료	성어용	58.0% 이상	10.5% 이상	1.1% 이상	1.3% 이하	0.8% 이하	9.0% 이하
서울-605	수입배합 사료	큰광어용 2호 사료	성어용	40.0% 이상	10.0% 이상	1.8% 이상	1.5% 이하	2.5% 이하	10.5% 이하

●서울특별시고시제1994-288호

서울특별시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

제한일부변경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1994년 2월 1일자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6호) 서울특별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

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994. 9. 5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변경내역		
제한업종	현 행	변 경
일반음식점	○영업제한시간 : 24 : 00~04 : 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 및 야간개장시장 (남대문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청과시장)내 업소는 제한치 않음	○현행과 같음
단 란 주 점	○영업제한시간 : 24 : 00~17 : 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제한치 않음	○현행과 같음
유 흥 주 점	○영업제한시간 : 24 : 00~17 : 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는 02 : 00 ~17 : 00까지 제한	○영업제한시간 : 24 : 00~17 : 00 -단,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업소 및 외국인 전용업소는 02 : 00~17 : 00까지 제한
휴게음식점	○영업제한시간 : 24 : 00~04 : 00 -단, 역사내 업소,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 시설내 업소는 제한치 않음	○현행과 같음

가. 관광호텔부대시설·관광객이용시설 및 외국인전용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업소

나. 야간개장시장내 업소 : 야간개장시장 내에 있는 업소로서 시장이 개장되는 시간에만 영업이 허용되는 업소

다. 역사내 업소 : 항공기, 기차, 버스 역사내 업소(단, 지하철역 및 시내버스역사내업소는 제외)

2. 시행일 : 이 고시는 1994. 9. 5부터 시행한다.

구 고 시

●관악구고시제1994-31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1. 우리 구 신림동 산 197-1 서울특별시고시 제500호(89. 12. 5)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3,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9. 5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위 치	규모(㎡)	비 고
기정	관악구 신림동 산 197-1	17,756	서울신림고등학교 면적정정
변경	"	17,611	(감 145㎡)

나.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도면 생략).

●용산구고시제1994-3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변경)

1. 서울시고시 제160호(1990. 6. 9)로 결정 고시 및 지적승인되고 용산구고시 제1994-32호(1994. 8.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원효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9. 5

용 산 구 청 장

가. 변경인가 개요

- 사업시행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1~원효로3가 52-6간
- 사업의 종류: 원효로 확장공사
-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22m-30m, L=1,200m
- 사업시행자: 용산구청장
- 사업시행기간: 92. 12. 31-95. 6. 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참조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2	61	30	1,200	원효로2가 (대 2-12)	원효로4가 (대 2-42)	원효로2가 1-93 주변 철도와 저촉된 도로 일부
변경	대로	2	61	30	1,200	"	"	변경(L=35m)

- 다. 변경조서: 따로 붙임(변경 토지조서, 변경 물건조서)
- 라. 기타사항은 변동 없음.

변 경 토 지 조 사

사업시행자: 용산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용산구 원효로1가 25

공사명: 원효로 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

당 초						변 경						비 고		
소재지 (주소)	지 목	지적 (㎡)	권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관 계 인 성명및 주소 소유권이 전의권리	소재지 (주소)	지 목	지적 (㎡)	권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관 계 인 성명및 주소 소유권이 전의권리
							원효로 2가 1 -157	대지	1.7	1.7	공 지 일 부 무 허 가 건 물 점 유	김익환 원효로 2 가 1-38		
							1-161	철도 용지	0.9	0.9	무 허 가 건 물	철도청		
							1-67	대지	1.3	1.3	"	황영준 의 1인 영동포구 신 길 동 1367 - 2 대방전철 ④ 다 505		
							1-158	"	1.9	1.9	"	"		
							1-159	"	0.8	0.8	"	철 도 청 의 1인 (김태석)		
							원효로 2가 1 -160	대지	6.3	6.3	공 지 일 부 무 허 가 건 물	철도청		
							1-162	철도 용지	27.2	27.2	공 지	"		

변 경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용산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용산구 원효로1가 25

공사명: 원효로 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

당 초							변 경							비 고
소재지 (주소)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관 계 인 소유권이 주 소 권의권리	소재지 (주소)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관 계 인 소유권이 주 소 권의권리	
							원효로 2가 1- 92 1-67	무허 가건 물	슬레이트 / 불 목	12.4		황영준 외 1인 영등포구 신길동 1367-1 대방전철 ④ 다 505		영업권 (철물점)

●용산구고시제1994-37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 제35호(1974. 4. 1)로 결정 고시 및 지적승인되고 용산구고시 제1992-7호(1992. 4. 1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보광동 265-122~265-92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9. 5
용 산 구 청 장

○ 변경인가 개요

구분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시행착수 및 준공예정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지적고시
당초	·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 명칭: 보광동 265-122~265-92간 도로확장공사	B=4~6 m L=30m	용산구청장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고시 제35호(74.4.1)	서울시고시 제35호(74.4.1)
변경	"	"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용산구고시 제1994-26호(94.6.29)	용산구고시 제1994-26호(94.6.29)

가. 변경조서: 따로 붙임(변경 토지조서, 변경 물건조서).

나. 기타사항은 변동 없음.

변 경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용산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용산구 원효로1가 25

공사명: 보광동 265-122~265-92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

당 초						변 경						비고	
소재지 (주소)	지 목	지적 면적 (㎡)	권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관 계 인 성명및 소유권이 주 소 전외권리	소재지 (주소)	지 목	지적 면적 (㎡)	권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보광동 265 - 1157	대	29	29		이성균 (보 광 동 8-6)		보광동 265 - 1167	대	18	18		이성균 (보 광 동 8-6)	

변 경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용산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 용산구 원효로1가 25

공사명: 보광동 265-122~265-92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

당 초						변 경						비고	
소재지 (주소)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관 계 인 성명및 소유권이 주 소 전외권리	소재지 (주소)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보광동 265 - 851	건물 조슬 래브	연와 조슬 래브	36	점포 및 주택	이성균 (보 광 동 8-6)		보광동 265 - 851	건물 조슬 래브	연와 조슬 래브	18	점포 및 주택	이성균 (보광동 8 -6)	

●양천구고시제1994-39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1994-33호 (1994. 7. 26)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1994-111호(1994. 8. 6)로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목동 산 51-16 외 1필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

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사회복지과(640-3355~6)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니다.

1994. 9. 5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양천구 목동 산 51-16 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명칭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다. 사업규모 : 연면적 4,300㎡(1,300평) 지하 1층, 지상 5층 라. 사업시행자 : 양천구청장 마. 사업시행기간 : 1994. 8~1997. 6. 30	바. 관계도면 : 별첨(생략)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없음.
---	--

토 지 편 입 조 서

연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목동 산 51-16	임 야	1,444	1,444	중랑구 망우동 207-2	엽광건설주식회사
2	목동 552-1	대 지	106	106	중랑구 망우동 127-15	이 영 순

●양천구고시제1994-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71호(1994. 8. 11)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9. 5
양 천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서

등급	유별	시설의 세분	번호	폭원 (m)	연장 (m)	시 점	종 점	비 고
중로	3	일반도로	70	12~18	2,750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내발산동 (좌·우안 접속) 경인극도 좌·우안 접속 도로 폭원확장(B=12~16→18m, L=132m) 폭아파트)	

나. 지적고시 도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640-3385)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공 고

●동작구공고제1994-134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1. 우리 구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

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9. 5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1994. 8. 31~1994. 9. 14

(14일간)
 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과(820-1385~7)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조서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1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당동 268-22 일대	436	종합사회복지관
2	폐지	공공공지	사당동 105-20	575.7	도로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단위: m)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	89	사당동 105-20	사당동 105-20	공공공지를 도로로 변경

● 영등포구공고제1994-145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1994. 9. 5

영 등 포 구 청 장

1. 지정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7동 769 외 28필지
2. 토지면적: 18,945.60㎡
3. 규모: 지상 18~22층 아파트5동 420세대
4. 사업주체: 한국보훈복지공단 사장 조명재
5. 공고기간: 1994. 8. 29~1994. 9. 12(14일간)

● 영등포구공고제1994-146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1994. 9. 5

영 등 포 구 청 장

1. 지정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28
2. 토지면적: 2,574.10㎡
3. 규모: 지상 23층 아파트 1동 114세대
4. 사업주체: 벽산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성우
5. 공고기간: 1994. 8. 29~1994. 9. 12(14일간)

● 마포구공고제1994-14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9. 5

마 포 구 청 장

양 도 인가일자	양도업종 및 년 허 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1994. 8. 2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2-서울-10-499)	상야토전 (주)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4-96	노병선	헤인건설 (주)	강남구 역삼 동 831-42	백남혁 백현근

●구로구공고제1994-171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4. 9. 5

구 로 구 청 장

1. 지정구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31-5 외 6필지
2. 면적: 15,238.54㎡
3. 아파트명: 개봉동 두산아파트
4. 규모: 21~28층 아파트 2동 561세대
5. 사업주체: 화영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이인석 외 207명
6. 공고기간: 94. 8. 29~94. 9. 12(14일간)

1. 건설부고시 제432호(1963. 7.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지적승인된 남산동2가 49-14~49-25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람공로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중구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4. 9. 5

중 구 청 장

●중구공고제1994-179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가. 사업개요

사 업 시 행 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 모	기 간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49-14~49-25간	○ 도시계획사업(도로) ○ 남산동 2가 49-27 주변 도로개설공사	폭 8m 연장 85m	인가일부터 2년	건설부고시 제 432호(63. 7. 1)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다. 공람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중구 토목과(260-1405~7) 및 건설관리과(260-1401)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남산2가 49-14~49-25간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수용할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산2가 49-19	대	8.9	8.9	국 (재무부)					
2	49-55	"	5.5	5.5	조병선	중구 남산2가 49-14	(주)국 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청량 리지점)	근저당권	
							"	" (성동지점)	"	
3	49-56	"	3.0	3.0	황보연	중구 남산2가 49-15	임귀택	동대문구 이문 동 264-291	"	
4	49-57	"	18.6	18.6	"	"	"	"	"	
5	49-58	"	19.4	19.4	장만윤	중구 남산2가 49-20				
					박원표	관악구 신림동 94-51				
6	49-59	"	23.2	23.2	문혜신	성북구 성북동 178-65 하이츠 빌라 202호	기술신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7-	가 압류	
							용보중 기금	7(서울지점)		
7	49-62	"	0.4	0.4	문혜신	성북구 성북동 178-65 하이츠 빌라 202	중소기 업은행	중구 을지로2 가 50(충무로 지점)	가 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기술신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7-	가 압류	
8	49-61	"	2.4	2.4	홍재안	중구 남산2가 49-35	명동 새마을 금고	중구 남산2가 41-1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 적 (㎡)	수용할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남산2가 49-54	대	3.8	3.8	이재분	중구 회현3가 6-1				
					박성혜	"				
					박준혜	"				
					박신헌	"				
10	49-63	"	0.9	0.9	이암후	중구 남산2가 49-48	(주)국 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영업 부)	근저당권	
							명 동 새마을 금 고	중구 남산2가 41-1	"	
11	49-60	"	3.1	3.1	이도용	중구 남산2가 49-27	(주)한 국신탁 은행	종로구 견지동 68-4	"	

수용할 건물조사

○ 사업명: 남산2가 49-14~49-25간 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수용할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산2가 49-14	건 물	14.2	조병선	중구 남산2가 49-14	(주)국 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청량 리지점)	근저당권	
						"	"	"	
						(청동지점)			
2	49-15	건물	16.5	황보연	중구 남산2가 49-15	박순원	양천구 신정동 947-4	가 등 기	
3	남산2가	건물	8.7	"	중구 남산2가	동 방 생 명 입귀택	중구 태평로2 가 150 동대문구 이문 동 264-291	근저당권	
		화장실	5.3					근저당권	
4	49-20	화장실	4.5	장만운	중구 남산2가 49-20	박원표	관악구 신림동 94-51	가 등 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수용할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남산2가 49-24	전 물	6.9						
6	49-35	전물	3.3	홍재안	중구 남산2가 49-35	명 동 새마을 금 고	중구 남산2가 41-1	근저당권	
		창 고	2.7						
7	49-34	가건물	3.3	이재분	중구 회현3가 6-1				
		전 물	0.2	박성혜	"				
				박준혜	"				
		박진혜	"						

●서초구공고제1994-279호

하천내공작물설치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하였기 동법시행

령 제22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9. 5

서 초 구 청 장

인 가 일 자	허 가 자 번 호	소재지	점용면적 (㎡)	허가기간	점 용 목 적	수 허 가 자	
						주 소	성 명
94. 8	94-23	서 초 구 반 포 동 117-6, 7	6,210	94. 10. 16~ 96. 12. 31	강남성모병원 앞 교차로 지하차도공사시 교통처리 를 위한 우회도로용 임시 가설교량	서대문구 합 정 동 27-1	서울특별시 중합건설본 부장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94-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9. 5

한강관리사업소장

연번	허가 연월일	위 치	지 목	점용 면적 (㎡)	점 용 목 적	점용 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	1994. 8. 24	서울시 마포구 망원 동 205-5선(한강)	하 천	166.4	유료보관함 및 레 저스포츠용품 서 비스코너	1994. 12. 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91-51	조결자
2	"	서울시 강동구 천호 동 319선(한강)	"	64	"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2-1	장양조
3	"	서울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83-6선(한 강)	"	119.35	"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730-1 청구강변④ 1109	장용준
4	"	서울시 송파구 잠실 동 1-15선(한강)	"	16.2	수영장내 간이매 점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	정길송
5	"	"	"	"	"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33 호	민경필
6	"	서울시 성동구 자양 동 423선(한강)	"	166.4	유료보관함 및 레 저스포츠용품 서 비스코너	1995. 5. 3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④ 1220-1203	실상근
7	"	서울시 서초구 잠원 동 137선(한강)	"	"	"	"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34-7	이종실
8	"	서울시 용산구 이촌 동 362-1선(한강)	"	16.2	수영장내 간이매 점	1994. 12. 31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6	유주영
<p>●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p>					<p>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9. 5 한강관리사업소장</p>			
허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4. 8. 29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5-5선 한강	하천	191.16㎡	유선장	94. 8. 26~ 94. 12. 31	서울시 송파구 가 락동 479 가락④ 28-106	화랑레포츠 대표 최순락	

인 사 발 령

기능직공무원 면직

●1994년 8월 25일자

영 제412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최 영 하 680816-1382625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가양하수처리 사 업 소	지방방호원 (10등급)
2	홍 중 회 710829-2009316	"	하수처리과	지방사무 보 조 원 (타자10등급)

기능직공무원 전보

●1994년 8월 26일자

영 제413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안 병 국 500620-1018317	서울 600년 사업추진본부	체육시설관리 사 업 소	지방전기원 (9등급)
2	최 충 식 580515-1721911	"	"	지방전기원 (10등급)
3	신 용 대 520418-1233212	"	"	지방기계원 (10등급)

5급 임업직 공무원 인사교류

●1994년 8월 29일자

영 제416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주 명 준	내 부 국 근 무	관 약 구	지방임업 사 무 관

5·6급 파견·인사교류 및 전보

◎1994년 8월 29일자

영 제417초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정전수	·내무국 ·교통부 파견근무 (1994. 8. 29~1995. 8. 28)	영등포구 지역교통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2	박규선	·내무국 ·영등포구 파견근무 (1994. 8. 29~1995. 8. 28)	교통부	행정사무관
3	강맹훈	·내무국 ·건설부 파견근무 (1994. 8. 29~1995. 8. 28)	중구 건축과장	지방건축 사무관
4	손병석	·내무국 ·중구 파견근무 (1994. 8. 29~1995. 8. 28)	건설부	건축사무관
5	김석희	·상공자원부 파견근무 (1994. 8. 29~1995. 8. 28)	연료과	지방화공 주사
6	임재근	·연료과 (1994. 8. 29~1995. 8. 28)	상공자원부	화공주사

6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1994년 8월 25일자

영 제65호

연번	성명	재청			현직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	이규상	시설계획과			강서수도 사업소		지방수도 토목주사

공 지 사 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변경안내
(1994. 8. 28)

공단대표 안내 : 290-6114, 고장신고 : 290-6399

부 서 명	일 반	부 서 명	일 반	부 서 명	일 반			
본	이 사 장	290-6100~1 6222 281-2301	본	비상계획계	290-6163~5	본	당 직 실	290-6280~2
	비 서 실	290-6102 6290~1 281-2302		예비군사무실	6168		구내식당매점	296-9817
				노 무 과(장)	290-6170			체력단련실
	감 사	290-6103~4 6211 6292		노 무 계	6171~4		기내대기실	6252
				시설관리과(장)	290-6176			B 2층
	총 무 이 사	290-6105~6 6293		운 영 계	6177~8		주차관제시	
				관 리 계	6180~3			스 탭 (박 스)
	영 업 이 사	290-6107~8 6294		공 사 계	6186~7		기사대기실	
					296-7045			
	부	기 획 실 (장)		290-6121~2 6123	영 업 부 (장)		290-6190~1	부
기 획 예 산 과 (장)			6192		전기실·기계실	6259		
기 획 계		6124~5	주 차 관 리 계	6193~5			중 앙 감 시 실	
예 산 경 영 계		6126~7	[FAX]	281-2306	로 비	6261		
홍 보 계		6129	영 업 2과(장)	290-6197			방 송 실 · 방 재 실	
전 산 과 (장)		290-6130	과 징 계	6198~202	수 위 실	6265~6		
			운 영 계	6131~3			281-2305	
개 발 계		6135~7	영 업 3과(장)	290-6204	회 의 실	6268~70		
전 산 기 계 실		6139	견 인 관 리 계	6205~9			용 역 사 무 실	
총 무 부 (장)		290-6140~1	[견인안내ARS]	6300	교 환 실	6275		
	총 무 과 (장)		6142	관 리 부 (장)			290-6212~3	전 산 교 육 실
인 사 계	6143~5	관 리 1과(장)	6214	대 강 당	6277			
서 무 계	6147~9	관 리 계	6215~8			주 방	6278	
경 리 과 (장)	290-6152	관 리 2과(장)	290-6220	1 구 역	756-0570			
		계 약 계	6153~5			총 팔 계	6221	2 구 역
지 출 계	6158-60	감 사 실 (장)	290-6228~9	[관 리 소]	290-6327			
비상계획과(장)	290-6162	감 사 과 (장)	6230			3 구 역	265-0608	
			6223~5	감 사 계	6231~3			4 구 역
		조 사 계	6234~6	인 현 상 가	268-5801			
		[FAX]	281-2307			석촌호수공원	415-3595	
		노 동 조 합	290-6239					

부 서 명		일 반	부 서 명		일 반	
주 차 관 리 소	등 부	274-0969	전 인 차 량 보 관 소	구 로	855-8611~2	
		290-6313				290-6323
	서 부	701-7368		(FAX)	855-8613	
		290-6314		창 동		990-9412~3
	남 부	784-5645		(FAX)	990-6503	
		290-6315		전인차량관리소		281-5003
	북 부	725-1025				290-6319
		290-6316				
	학 여 울 역	290-6317		어 소 장 실		457-7056
	구로공단역	290-6318		린		290-6311
목 동 노 의	654-8131	이 운 영 과		457-7054		
사 당 노 의	587-4937	대 운 영 계		290-6312		
유 료 도 로	남 산 1 호	279-1770	공 원 사 업 소	서 무 계	457-7057	
	남 산 3 호	757-9731		원 관 리 과	457-7055	
	남 산 순 환	268-9896		사 식 물 계	457-7059	
	북 약	915-9282		업 방 송 실	457-7058	
	도 울 립 락	429-2740		소 (FAX)	456-9688	
	한 강 주 차	290-6326		사 업 소	356-9069	
		780-6039		(장 재 장)	290-6310	
한 강 거북선	790-1891~2	장	0344)63-6828~9			
견 인 차 량 보 관 소	마 장	293-0263	표 사 업 소		0344)63-8771	
		296-9830		(FAX)	0344)64-8772~3	
		290-6320		용 미 1 묘 지	0348)942-0642	
	(FAX)	298-3844		(FAX)	0348)943-0643	
	여 의 도	783-2467		용 미 2 묘 지	234-3933	
		761-1003		업	0348)942-0336	
		290-6321		벽 계 묘 지	0344)64-1176	
	(FAX)	783-8996		소 망 우 묘 지	434-3337	
	잠 실	416-0282		(FAX)	209-7738	
		422-5661		내 폭 묘 지	0346)572-5839	
		290-6322				
	(FAX)	202-3226				
	홍 제	722-3173				
	725-5827					
	290-6324					
(FAX)	722-3172					